

예 산 총 칙

제 1 조 202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52,760,126	16,582,804
일반회계	491,763,686	14,752,911
특별회계	60,996,440	1,829,893
공기업특별회계	32,282,511	968,475
상·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	32,282,511	968,475
기타특별회계	28,713,929	861,418
의료급여기금운영	1,299,142	38,974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	716,934	21,508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9,879,244	296,377
농공지구조성사업	2,930,609	87,918
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	13,888,000	416,64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 명세" 와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별첨 "채무부담행위조서" 와 같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 사업조서" 와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 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3,450,000천원, 재해·재난 목적 예비비는 5,897,235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,582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복구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